부천우편집중국 공고 제2025-40호

2025년도 제8회 기간제 우정실무원 수시 채용 공고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소통 관련 보조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천우편집중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근무형태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고
기간제 우정실무원	중근 전일제 (14:00~23:00)	2명	- 우편물(소포, 통상) 적재 구분체결 등 - 고중량 우편자루 개낭 및 파렛 적재 - **고중량 파렛 운반 및 전동차 운행** 등 - 기타 부대업무	**※고중량 우편물 운반 및 우편물이 적재된 파렛 이동작업 가능한 체력을 요함**
	석근 시간제 A (18:00~22:00)	5명		
	석근 시간제 B (19:00~23:00)	1명		
	조근 시간제 (03:00~07:00)	1명	- 우편물(소포, 통상) 분류, 체결 - 우편물 기계공급 및 적재 파렛 운반 - 기타 부대업무	

2. 근무 조건

1. 신　　분 : **기간제 우정실무원 (비공무원)**
2. 근로계약기간 : 2025. 12. 5.(금) ~ 2026. 3. 31.(화)
   채용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작업배치 전 안전교육 실시 : 2025. 12. 5.(금) 13시~ (예정)
3. 보　　수
   - o 기본임금(시급 10,030원) + 기타수당
   - o 기타수당 : 주휴수당, 직무수당, 급식비, 가족수당(해당자 한) 등
   - o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o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주 5일, 근무형태 아래 참조

o 시업 및 종업시각:

- 중근 전일제(14:00~23:00)

구분	월	화	수	목	금
시업 및 종업	14:00~23:00	14:00~23:00	14:00~23:00	14:00~23:00	14:00~23:00
근무시간	8	8	8	8	8

- 석근 시간제A(18:00~22:00)

구분	월	화	수	목	금
시업 및 종업	18:00~22:00	18:00~22:00	18:00~22:00	18:00~22:00	18:00~22:00
근무시간	4	4	4	4	4

- 석근 시간제B(19:00~23:00)

구분	월	화	수	목	금
시업 및 종업	19:00~23:00	19:00~23:00	19:00~23:00	19:00~23:00	19:00~23:00
근무시간	4	4	4	4	4

- 조근 시간제(03:00~07:00)

구분	화	수	목	금	토
시업 및 종업	03:00~07:00	03:00~07:00	03:00~07:00	03:00~07:00	03:00~07:00
근무시간	4	4	4	4	4

※ 부천우편집중국 정원조정, 순환근무, 물량증감 등 업무상 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조근) 근로자는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사업장지정병원-무료)을 수검 해야 하며, 특수검진결과 야간근로 부적합 판정 시 야간근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6. 휴　　가 : 연차유급휴가(한 달 만근 시 1일 부여) 등

3. 응시 자격

1 . 응시연령 : 최종 채용시험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2 .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 성실한 자

3 .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4 . 응시자격 제한

o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o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우대 요건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단,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

2.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3. 근무경력자

   o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우정실무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부천우편집중국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o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6. 응시서류 접수

1. 모집공고 : 2025.11.24.(월) ~ 12.1.(월)
2.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5.11.27.(목) ~ 12.1.(월) 17시까지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원서교부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4.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비대면(등기우편・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천우편집중국 4층 물류총괄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1번길 40)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시 : bmcenter@korea.kr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서류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스캔하여 첨부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 ~17:00까지 (11:30~13:00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서류임을 기재

예시) "기간제 우정실무원 응시원서 재중"

※ 채용부서의 접수확인 답신이 없는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완료 여부 확인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2.(화),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세부일정 공고
2. **면접시험일시** : 2025. 12. 3.(수)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4.(목) 면접응시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o 필수서류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사용】
- 표준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첨부양식 사용】
- 범죄사실부존재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o 해당자 추가서류(우대요건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1.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전까지 부천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야간(조근)근로자는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사업장지정병원-무료)을 수검 해야 하며, 특수검진결과 야간근로 부적합 판정 시 야간근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에 초과되거나 이하 인원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축소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천우편집중국에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o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천우편집중국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o 부천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032-680-0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 시 원 서

(제26조제1항 관련)

본인은 2025년 제8회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부천우편집중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종	기간제 우정실무원	응시근무형태 (택 1)	**중근 전일제 (14:00~23:00) [ ]**
			석근 시간제A(18:00~22:00) [ ]
			석근 시간제B (19:00~23:00) [ ]
			조근 시간제 (03:00~07:00)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전자우편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종	기간제 우정실무원	응시근무형태 (택 1)	**중근 전일제 (14:00~23:00) [ ]**
			석근 시간제A(18:00~22:00) [ ]
			석근 시간제B (19:00~23:00) [ ]
			조근 시간제 (03:00~07:00) [ ]
2025년 월 일 **부천우편집중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부천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아래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 근무형태 : 응시하고자 하는 근무형태(석근시간제A, 석근시간제B 등)를 반드시 선택하여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

4.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범죄사실부존재확인서 순으로 편철(편집)하여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범죄사실부존재확인서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 전자우편 접수시 주의사항

- 응시서류의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기재 후 스캔하여 제출
(서명 이미지 첨부 또는 한글-입력-도형-그리기 개체 이용 등을 통한 서명도 가능)
- 자필서명 누락 등의 경우에는 접수 불가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합격자 공고는 부천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2]

표준이력서 양식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응시 근무형태**	
성 명	**(한글)**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e-mail)**	

2. 교육사항				
	교육 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직무관련 직업교육				

3. 근무 경력사항 (채용 우대 근무경력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근무기간	기관(회사)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 고

4.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5.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6. 특기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7. 기타 우대사항

구분	내용	해당여부
지역인재		☐
기능인재(고졸인재)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 2025. . . 지 원 자 : (인)

※ 본인 자필로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제출된 자료와 대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나 허위 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기간제 우정실무원
생년월일	. . .	응시 근무형태	

지 원 동 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본인의 장 · 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우정실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민감정보(사상, 신념(종교)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기재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5.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印)

[붙임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응시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운전면허, 운전경력,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이용 : 성명, 생년월일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교육사항, 근무경력사항, 자격사항, 직무관련 기타 활동, 자격증 등 ④ 채용시 우대를 위해 이용 : 장애인 구분, 수급대상자 구분 등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당사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및 채용관리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종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5 년 월 일

이름 : **(서명 또는 印)**

부천우편집중국장 귀하

※ 응시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5]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에 위배되는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